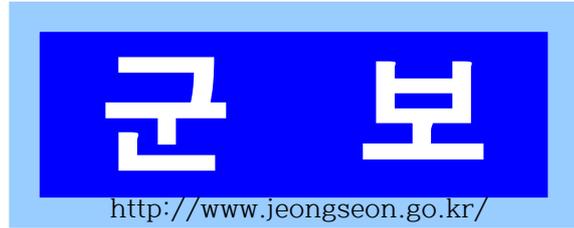




#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617호 2022. 1. 18. (수)

## 【고시】

- 북평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 변경(5차) 고시 .....1
-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2
-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3
- 주민조례청구 연서대상 주민총수 공표.....5

## 【공고】

- 정선 군관리계획(신사택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 .....6
-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10
- 정선군 건축위원회 심의 지역 (변경)지정(안) 행정예고.....11
- 야생화마을 추리본부 CCTV 구매·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14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23-1호

## 북평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 변경[5차] 고시

농촌중심지의 중심거점공간을 육성하고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북평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 계획[5차]를 수립을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1월 13일

## 정 선 군 수

1. 사업의 명칭 : 북평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2. 사업의 목적
  - 북평면 중심지 거점공간을 육성하고 마을 특성을 살린 체계적인 사업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주민역량 및 마을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3.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사업구역 :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외 배후마을 일원
  -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복지회관 리모델링, 주차장 조성, 북평 문화광장
    - 지역 경 관 개 선 : 명품테마거리, 근대문화거리 조성
    - 지 역 역 량 강 화 : 주민교육 및 홍보·마케팅, 부대비용 등
4. 사 업 비 : 6,125백만원(국비 3,938, 지방비 2,187)
5. 사업기간 : 변경

○ 당초 : 승인일로부터 ~ 2022.12.31.

○ 변경 : 승인일로부터 ~ 2023.04.30.까지

6. 세부사업 변경계획 : 해당없음

7.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

8. 위(수)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

※ 기타 시행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시과에 비치된 시행계획서 열람 가능  
(도시과 도시개발 ☎033-560-2456)

정선군 고시 제 2023 - 3호

###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투표법」 제5조 및 제9조, 「정선군 주민투표조례」 제5조 및 제 16조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정선군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23년 1월 일

## 정 선 군 수

(단위 : 명)

18세 이상 주민수(A)			선거권 없는자(B)	청구권자 총수 (A-B)	비 고
계	주 민 등 록	조 례 외국인			
31,604	31,569	35	40	31,564	

☞ 주민투표 청구 서명 주민 수 : 3,157명 이상

※ 청구권자 총수의 1/10이상 서명

정선군 고시 제 2023 - 4호

##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2023년도 정선군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23년 1월 일

## 정 선 군 수

### □ 주민소환투표 주민청구권자 총수

(단위 : 명)

시군명	19세이상 주민수(A)			선거권이 없는 자(B)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A-B)	비 고
	계	주민 등록	3년경과 등록 외국인			
정선군	31,414	31,379	35	40	31,374	

※ 2022. 12. 31. 기준

### □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

#### ○ 정선군수

(단위 : 명)

선거구명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총수	서명인수	비 고
<b>정선군수</b>	<b>31,374</b>	<b>4,711</b>	<b>총 서명인수</b>
정 선 읍	8,834	1,326	읍면 최소 서명인수
고 한 읍	3,838	576	"
사 북 읍	3,959	594	"
신 동 읍	3,074	462	"
화 암 면	1,503	226	"
남 면	2,854	429	"
여 량 면	1,848	278	"
북 평 면	2,232	335	"
임 계 면	3,232	485	"

## ○ 정선군의회의원

(단위 : 명)

선거구명	읍면명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총수	서명인수	비 고
가 선거구	<b>소 계</b>	<b>17,649</b>	<b>3,532</b>	<b>총 서명인수</b>
	정선읍	8,834	1,767	읍면 최소 서명인수
	화암면	1,503	301	"
	여량면	1,848	370	"
	북평면	2,232	447	"
	임계면	3,232	647	"
나 선거구	<b>소 계</b>	<b>13,725</b>	<b>2,746</b>	<b>총 서명인수</b>
	고한읍	3,838	768	읍면 최소 서명인수
	사북읍	3,959	792	"
	신동읍	3,074	615	"
	남 면	2,854	571	"

정선군 고시 제 2023 - 5호

## 주민조례청구 연서대상 주민총수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정선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2023년도 정선군 주민조례청구 연서대상 주민총수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23년 1월 일

## 정 선 군 수

(단위 : 명)

18세 이상 주민수(A)			선거권이 없는자(B)	연서대상 주민총수 (A-B)	비 고
계	주민등록	3년경과 등록외국인			
31,604	31,569	35	40	31,564	

☞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 : 1,579명 이상

※ 연서대상 주민 총수의 1/20이상

정선군 공고 제2023-2호

**정선 군관리계획(신사택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정선 군관리계획(신사택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6일

정 선 군 수

1. 공람목적 : 정선 군관리계획(신사택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2. 위 치 :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90-2번지 일원
3. 공람개요 : 기숙사(E동) 신축 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 가. 관광휴양시설용지(기숙사) 면적 증가
    - 관광휴양시설용지 : 22,557㎡ → 29,034㎡ (증) 6,477㎡
  - 나. 공공시설 및 녹지용지 면적 변경
    - 공공시설용지 : 22,097㎡ → 20,125㎡ (감) 1,972㎡
    - 녹지용지 : 27,386㎡ → 22,881㎡ (감) 4,505㎡
4. 정선 군관리계획(신사택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및 도면 : 게재 생략(공람 장소 비치)
5. 관련도서 비치 및 열람 장소 : 정선군청 도시과 및 고한읍 행정복지센터
6. 공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 이상(2023. 1. 6. ~ 2023. 01. 20.)
7. 의견제출 방법 및 장소 : 공람기간 내 정선군청 도시과 및 고한읍 행정복지센터 서면 제출

8.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선군 도시과(033-560-2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공람·공고(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선 군관리계획(신사택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의견서

<b>공 랑 건 명</b>	정선 군관리계획(신사택지구 지구단위 계획) 결정(변경)(안)		접수번호	
			접 수 일	2023. 1. .
<b>공 랑 인 인 적 사 항</b>	주 소			
	성 명			
	연 락 처			
<b>토 지 소 재 지</b>	위 치			
	면 적			
	기 타 사 항			
<b>공 랑 의 견</b>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따라 열람·공고한 “정선 군관리계획(신사택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23년 1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신청인 (인)</p>				
<p><b>정 선 군 수</b> 귀하</p>				



정선군 공고 제 2023 - 30호

##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3항,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 명단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3년 1월 일

정 선 군 수

일반명단 작성비용	라벨용 명단 작성비용	전산자료 복사본 (USB)
A4 용지(매당) 60원/매	A4 라벨용지 200원/매	(10,000원×USB개수)

정선군 공고 제2023 - 40호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정선군 건축위원회 심의 지역을 (변경)지정함에 있어, 지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9일

## 정선군수

### 정선군 건축위원회 심의 지역 (변경)지정(안) 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정선군 건축위원회 심의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 1. 지정이유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정선군 건축위원회 심의지역을 변경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심 의 지 역 (변경)

- 당 초 : 정선군 전 지역
- 변 경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타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결정·승인 또는 신고 등에 따라 의제처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개발진흥지구
- 읍지역(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나. 지 정 기 간 : 2023. 2. 1. ~ 지정해제일 전 일까지

다. 행정예고기간 : 2023. 1. 9. ~ 2023. 1. 31.(22일간)

라. 공 고 방 법 : 정선군청 홈페이지(<http://www.jeongseon.go.kr>)

### 3.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정선군수(참조:도시과장)에게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서(붙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기간 : 2023. 1. 9. ~ 2023. 1. 31.(22일간)

라. 보내실 곳 및 연락처

- 우 편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도시과
- 팩 스 : 033-560-2596
- 전자우편 : jys6424@korea.kr

### 4. 그 밖의 사항

이 행정예고(안)에 대한 문의사항은 정선군 도시과(전화 033-560-2474, 팩스 033-560-2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서 1부. 끝.

**【붙임】****정선군 건축위원회 심의지역 (변경)지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건 명	정선군 건축위원회 심의지역 (변경)지정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건축위원회심의 (변경)지정 지역		제출 의견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타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결정·승인 또는 신고 등에 따라 의제처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개발진흥지구 - 읍지역(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정선군 건축위원회 심의지역 지정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23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정선군 공고 제2023-66호

## 야생화마을 추리본부 CCTV 구매·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정선 야생화마을 추리본부 시설물 안전 관리와 화재 및 훼손·도난 등 재난·재해 발생 대비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 16.

### 정 선 군 수

#### 1. 행정예고 및 설치 목적

정선군 고한읍 고한4길 30일원 야생화마을 추리본부 시설 관리 및 이용객 안전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이해관계인과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 2. 관련근거

-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 나. 「행정절차법」 제46조

### 3.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야생화마을 추리본부 CCTV 구매·설치  
 나. 시행자 : 정선군(전략산업과)  
 다. 설치장소 : 정선군 고한읍 고한4길 30  
     - 야생화마을 추리본부 시설 내부(7대) 및 출입구(2대)  
 라. 설치대수 : CCTV 9대

### 4. 공고개요

- 가. 공고기간 : 2023. 1. 16. ~ 2022. 2. 5.(20일간)  
 나. 공고방법 : 정선군청 홈페이지(<http://www.jeongseon.go.kr>)

###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정선군청 전략산업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제출기한 : 2023. 1. 16. ~ 2023. 2. 5.(20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기한 내 도착분까지 유효), 팩스  
 다. 제출처 : 정선군 전략산업과  
     - 우 편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정선군청 전략산업과)  
     - 전 화 : 033) 560-2350  
     - F A X : 033) 560-2594  
 라. 기재사항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성명(단체명) 등 인적사항  
 마. 공청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하고 현 행정예고대로 시행합니다.

**「야생화마을 추리본부 CCTV 구매·설치」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행정예고(안)		수정제출(안)		사 유

야생화마을 추리본부 CCTV 구매·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